

「군포도시공사 시민행복 참여위원회 운영내규」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상



2023년 2월 14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78 호

군포도시공사 시민행복 참여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시민행복 참여위원회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구성 및 임기) 제2항 중 “경영시설본부장으로”를 “외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미 래 기 획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미 래 기 획 부 장 한 대 희
	직 위 성 명	혁 신 기 획 팀 장 성 용 현
	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양 수 (3 9 0 - 7 6 1 4)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 및 임기)	제3조(구성 및 임기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<u>경영시설본부장</u> 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은 노조부위 원장과 미래기획부장 및 해당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. 위촉위 원은 각계각층의 시민 및 전문 가 중에 사장이 위촉한다.	② ----- <u>외부 위촉위원 중에서</u> <u>호선하여 선출</u> --, ----- ----- -----, -----, -----.
③ ~ ④ (생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